지뢰사고의 **아픔**
국방부가 **함께** 합니다.
지금 신청하십시오!

지뢰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안내

지뢰사고 피해자 지원이란?

지뢰사고로 **피해**를 입은 **국민**을 **지원**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에 따라, **피해자** 또는 **유족**에게 **위로금** 및 **의료지원금**을 **지급**하는 **제도**입니다. 「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16359호, 2019. 4. 23. 제정 2019. 6. 1. 일부개정안 시행)

신청 대상자 1953. 7. 27 ~ 2012. 4. 15까지의 지뢰사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

신청제외 대상
1.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이나 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
2.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
3. 군인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

신청 기간 및 방법

신 청 기 간 2019. 6. 1. ~ 2021. 5. 31.
신 청 처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(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, 국방컨벤션 421호 / 02)748-5962)
신 청 방 법 신청처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
신 청 서 식 국방부 누리집 → 정보공개 → 업무분야별 자료 → 서식 → 지뢰피해자 지원 서식 활용

지급절차

위로금 등 신청서 접수 → **사실 조사** → **위원회 심의 · 결정 · 지급**

산정기준



- **위로금** – **사망자** : 위로금 X (1+[(지급일−사망일) / 365 X 0.05])
  – **상이자** : (휴업위로금 + 장해위로금) X (1+[(지급일−상이일) / 365 X 0.05])
  – **상이자 중 사망자** : 휴업위로금 + 장해위로금 + 사망위로금
  * **위로금** : 월 평균 임금 X 장래 취업가능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X 본인의 생활비 공제율 X (1−피해자 과실률)
  위로금이 현저히 적을 경우 법령에 따라 조정지급(2천만원 한도) 가능
- **의료지원금** : 기지급치료비 + 보호비 + 보장구 구입비 + 향후치료비

* 궁금하신 것은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단(02-748-5963)이나 주민자치센터 민원창구를 이용하십시오 / * 국방부 홈페이지 www.mnd.go.kr

대한민국 국방부
Ministry of National Defense